

 신안산대학교	교원세부직위 전환에 관한 규정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규정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-3-11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제정일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015. 11. 19.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개정일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024.3.20.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책임부서/팀·계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교무처</td></tr> </table>	규정번호	2-3-11	제정일자	2015. 11. 19.	개정일자	2024.3.20.	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규정번호	2-3-11									
제정일자	2015. 11. 19.									
개정일자	2024.3.20.									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							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임용 시 역할에 따라 부여된 세부직위 전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비정년트랙 교육전담교원 및 취업전담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3조(전환직위) 세부직위 전환에 따라 임용 시 교육전담교원 및 취업전담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을 강의전담교원으로 명칭을 전환한다.

제4조(전환절차) 교원의 세부직위 전환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의 승인에 의한다.

제5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합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2016년 3월 1일자 재임용 대상자의 평가는 직위전환 전 평가표를 적용하며 이후 대상자는 전환된 평가표를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